#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30

발의연월일: 2021. 3. 25.

발 의 자:김상훈·김영식·강대식

양금희・서병수・조수진

송석준·전주혜·장제원

박대출 • 이종배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로 서민들의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서민주거형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에서 소외되는 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생 략)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시 거주(「주민등록법」	②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	
주택을 취득[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	
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	
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취득세를 <u>2021년</u>	<u>2024년 12</u>
<u>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u>월 31일</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